

주주님께

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 시 : 2024년 3월 28일 (목) 오전 9시
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596, 신라스테이 구로 21층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사항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17기(2023.01.01~2023.12.31) 재무제표,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,
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[별첨1]

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[20억]

제4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[1억]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직접행사 : 신분증

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 및 증명서 첨부), 대리인 신분증

6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2024년 3월 13일

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, 1701호(구로동, 제이엔케이디지털타워)

주 식 회 사 탑 코 미 디 어

대 표 이 사 유 정 석 (직인생략)

현행	개정	개정이유
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<u>1.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업</u> <u>2. 방송장비 개발업</u> <u>3. 디지털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판매업</u> <u>4. 영상 음향기기 개발 및 제조판매업</u> <u>5. 정보통신사업</u> <u>6. 정보통신공사업</u> <u>7. 부동산임대업</u> <u>8.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</u> <u>9. 전자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</u> <u>10.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</u> <u>11.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, 제작, 유통, 판매에 관한 사업</u> <u>12.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</u> <u>13. 디지털 콘텐츠의 모바일 서비스</u> <u>14. 저작권 유통, 배포</u> <u>15.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, 임대업</u> <u>16. 출판업</u> <u>17. 만화, 소설 등 콘텐츠 제작, 유통, 판매업</u> <u>18.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, 유통, 판매업</u> <u>19.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업</u> <u>20. 아티스트 에이전시업</u> <u>21.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u> <u>22. 인터넷 전자화폐 및 전자상품권 발행업</u> <u>23.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u> <u>24.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</u> <u>25.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 서비스업</u> <u>26.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</u> <u>27. 위 각항에 관련된 제조업</u> <u>28. 위 각항에 관련된 수출입업</u> <u>29. 위 각항에 관련된 중개 판매업</u> <u>30.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</u>	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<u>1.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, 제작, 유통, 판매에 관한 사업</u> <u>2.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</u> <u>3. 디지털 콘텐츠의 모바일 서비스</u> <u>4.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, 임대업</u> <u>5. 출판업</u> <u>6. 만화, 소설 등 콘텐츠 제작, 유통, 판매업</u> <u>7.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, 유통, 판매업</u> <u>8.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업</u> <u>9. 아티스트 에이전시업</u> <u>10.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/u> <u>11. 위 각항에 관련된 수출입업</u> <u>12. 위 각항에 관련된 중개 판매업</u> <u>13.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</u>	STB(셋톱박스) 사업 영업양도로 인한 STB와 관련된 사업목적삭제 및 미영위 사업목적삭제

현행	개정	개정이유
제10조(신주인수권) ① (생략)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1. ~7. (생략) 8. 『 <u>근로자복지기본법</u> 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~ ⑤ (생략)	제10조(신주인수권) ① (현행과 동일)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1. ~7. (현행과 동일) 8. 『 <u>근로복지기본법</u> 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~ ⑤ (현행과 동일)	법률명칭 변경
제11조의2(우리사주매수 선택권) 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『 <u>근로자복지기본법</u> 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② ~ ③ (생략)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『 <u>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</u> 』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. ⑤ ~ ⑦ (생략)	제11조의2(우리사주매수 선택권) 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『 <u>근로복지기본법</u> 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② ~ ③ (현행과 동일)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『 <u>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</u> 』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. ⑤ ~ ⑦ (현행과 동일)	법률명칭 변경
제35조(이사회 구성과 소집) ① ~ ② (생략)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, 그 외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단, 통지는 무선이동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 ④ ~ ⑤ (생략)	제35조(이사회 구성과 소집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, 그 외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단, 통지는 무선이동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 ④ ~ ⑤ (현행과 동일)	상법 제390조 반영
제51조(이익배당) ① ~ ③ (생략)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	제51조(이익배당) ① ~ ③ (생략)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.	상법 제462조 반영
<신설>	본 정관은 2024년 3월28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 신설